

제116회 KISTEP 수요포럼

주 제 : 신제품신기술을 현실로, 혁신의 실험장! 규제샌드박스

담당자 : 윤수진 부연구위원(T. 02-589-2971)

포럼 종합 요약

2019. 12. 4


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Korea Institute of S&T Evaluation and Planning

2. 발표 주요 내용

□ 규제샌드박스 도입의 배경 및 목적

-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정부 규제로 신산업·신기술의 발전이 저해되므로,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

□ 규제샌드박스 개념

- 『규제 샌드박스*』란,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·신산업에 대해 일정조건下(시간·장소·규모)에서 규제를 면제·유예시켜주는 ‘혁신의 실험장’

*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(Sandbox)에서 유래

- 규제혁신 3종 세트 : 규제 신속확인①, 규제 실증특례②, 임시허가③

- ① 신속확인 :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 30일 이내 확인
 - ② 실증특례 : 안전성에 대한 시험·검증이 필요한 경우,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‘우선 시험·검증 제도’
 - ③ 임시허가 : 검증된 신제품·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한 일정 기간 동안 ‘선 출시허용, 후 정식허가 제도’

□ 주요 성과

- 규제특례를 통해 新산업분야 혁신의 실험장 마련

- 해외사례에 비해 신속한 심의절차의 추진, 금융 등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제도의 적용

※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통해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

※ 규제 신속확인 포함 시, 총 166건*의 규제해소 지원('19.11) (신속확인 80건, 실증특례 16건, 임시허가 5건, 정책권고 등 12건 등)

- 적극행정 실현 및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샌드박스 제도 완성도 제고

- 규제 신속확인을 통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유연한 법령해석·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해결 사례 도출

- 1:1 밀착상담, 법률자문, 기술자문 및 부처간 정부 공유 등 끊임없는 피드백 수행
-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목표 조기 달성, 시장 출시 사례도 도출 ('18년 시장 출시 5건, '19년 시장 출시 20건)
- 샌드박스로 기승인된 동일·유사 신청 사례에 대해 'Fast Track' 심사제도를 도입,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로 최장 2개월 이내 처리

□ 향후 계획

-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해소사례 적극발굴
 - 사회적 갈등 과제, 해묵은 과제 관련 사례 창출 적극 추진
- 철저한 사후지원으로 기존 승인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촉진
 -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적극 해소 지원
- 패스트트랙, 사전 법령정비 요청 제도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혁신 가속화
 - 동일·유사 사례에 대한 패스트트랙, 부가조건 변경 및 사전 법령정비 요청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
- R&D 프로세스 관리 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발굴
 - 정부 R&D 사업과 연계하여 신제품·서비스 사업화 지원단계 규제개선 추진
- 해외 각 국의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한 '글로벌 규제샌드박스 제도' 구축
 - 샌드박스 협정(가칭)을 통한 상호인증체계 구축 및 글로벌 규제 프리존 제도 확립
- 신제품·서비스의 국내시장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확립
 - 특례 이후, 스타트업·벤처기업의 투자유치·판로확보를 위한 사업화 지원대책 마련

3. 주요 토론 내용

□ 규제관련 조직 변화를 동반한 전반적 법령체계의 전환 필요

-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관련하여 어떤 나라보다 앞서있으나 대륙법 체계의 특징인, 사전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진입규제 등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전반적 법령체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
- 미국식의 벤처를 원하면서 유럽식의 규제가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, 이를 위해 규제 축소와 더불어 관련 조직의 축소도 필요

□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파급력 있는 성과 미미

- 공유경제나 원격의료와 같은 파급력 있는 중요 이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 미미
-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합법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승인에 신중을 기할 필요(소비자 보호, 해당 기업의 경영 이슈, 특허 등 이슈 제기 가능성)
 - 4년 내로 법령정비가 어려운 경우 법령정비가 완료될때까지 승인을 연장하도록 하는 산업부의 체계가 가장 이상적임

□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서의 확대 필요

- 금융위원회가 타 부처대비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이 소관 법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소되기 때문임
- 타 부처의 경우 규제가 여러부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부처간 협의가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있음
 - 특히,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당한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유예 심사가 필요

□ 2년(4년) 뒤 유예기간 종료 후 문제 대비

-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현행 규제와

과학기술간의 부정합이나 갈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, 오히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가 더 중요

- 최대 4년인 일시적 규제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진입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신기술, 서비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
- 대부분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이슈이므로 규제 샌드박스 허용 이상의 정성과 노력 필요
- 허용된 신기술,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제도별로 법제도 개선, 정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

□ 기업이 바라보는 '규제샌드박스' 도입의 장점과 개선방향

- 기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(Gray zone) 조항을 명확하게 정의해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 전 사업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타진해 볼 수 있는 장점
- 어떤 사업자가 왜 선정이 되었고,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어떠한 준비가 부족했는지를 제시하여 기업이 이후 재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필요
- 임시허가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 지원 필요 (현행은 실증특례에만 지급됨)

□ 승인 이후에도 단계적·세부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

-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령을 명확히 하거나 행위에 대한 허가를 준다 하더라도 실제 산업에서 적용되기 위한 정책이나 시행령 등이 추가로 필요 (예: 휴이노 실증특례 사례)
- 해외에서는 허용이 가능한 사업들이 국내의 특화된 법령 또는 이해관계 등에 의해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, 이를 국가 또는 연구기관/산업계/위원회 등에서 선제적으로 현행법/이해관계/산업규모 등을 검토해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

□ 전담기관 법적 역할 근거 보완 등을 통한 절차 개선 제언

- 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0조의3에 의해, 신청 내용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

필수적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심의위의 과부하 문제 발생

- 단순 애로 사항(투서, 음해)이나, 비현실적 주장(영구기관 임시허가요청), 반복된 신청에 대해서도 심의위에 상정·심의되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‘전담기관’의 신청 각하나 기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음

- 전담기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우,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중간 단계인 샌드박스 전담기관이 사전에 거른다는 기업의 불만이나 비판이 발생할 수도 있음

□ 유사내용에 대한 구체적 승인 기준 마련 필요

- 이미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기업이 동일한 내용을 신청할 경우, 승인여부 결정기준(특허와 같은 독점적 인센티브인지 아닌지 등) 관련하여 정부 입장 정리 필요

※ 도심 내 수소 충전소 실증특례는 독점인가? DTC 특례는 나눠주기인가?

- 규제샌드박스의 각 부처별 법령은 별도 법률상의 개별 제도이므로 법적으로 각 샌드박스 승인을 위한 동시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,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도입의 취지상 개선 필요

□ “규제 신속확인 제도” 실효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제언

-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신속확인 제도의 수혜자는 신청자가 아닌 동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부임
- 신청자에게 신속확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금융 규제샌드박스와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

□ 규제샌드박스의 승인절차에 대한 이견 조정 및 지속적 개선 필요

-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 자체를 규제유예의 대상으로 보는 신청자의 시각이 있는 등 규제샌드박스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